

중부내륙선의 지선 현풍휴게소

「하이패스IC 설치」 협약서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중부내륙선의 지선 현풍휴게소에 하이패스 IC를 설치·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와 달성군이 사업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본 협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① “하이패스IC(이하 ‘나들목’이라 한다)”이라 함은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한 차량만 고속도로 진출입이 가능한 간이형식 나들목을 말한다. 다만, 하이패스 IC 명칭은 협약체결 후 한국도로공사와 달성군이 별도 협의하여 확정한다.

② “현풍휴게소에 하이패스IC를 설치·운영하는 사업(이하 ‘사업’이라 한다)”이라 함은 현풍휴게소에 하이패스 영업시설 및 접속도로를 설치하여 나들목을 설치·운영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.

③ “사업비”라 함은 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조사설계비, 공사비, 보상비 및 제경비 등을 말한다.

④ “제경비”라 함은 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되는 다음 각 목의 경비를 말한다.

가. 한국도로공사의 감독원의 인건비

나. 이 사업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등(한국도로공사 사규 및 규정 적용)

⑤ “접속도로”라 함은 영업시설과 지역 내 도로를 연결하기 위하여 설치·개량하는 도로를 말한다.

⑥ “영업시설”이라 함은 하이패스 시스템 기기 등 나들목 이용 차량의 요금수납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(ETCS, 축중기, 건축물, 부스 및 영업부대시설 등)을 말한다.

제3조(사업시행자 등) ① 이 사업의 시행자는 달성군으로 하고, 달성군은 본 협약과 별도로 국도의 연결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.

② 한국도로공사는 설계, 용지보상, 제 영향평가, 문화재 발굴, 공사시행, 영업시설 운영·관리 및 접속도로 유지관리 등을 시행한다.

제4조(사업기간) 영업시설 및 접속도로 설치는 2016년까지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한국도로공사 및 달성군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
제5조(사업비) ① 이 사업의 사업비는 실시설계 후 확정한다.

② 실시설계 이후 지가변동, 낙찰률, 설계변경, 기타 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’에 따라 사업비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 한국도로공사와 달성군은 상호 협의하여 사업비를 변경하고, 준공 후 정산 처리한다.

제6조(사업비 부담 및 관리) ① 사업비 부담은 「고속국도 IC (하이패스 포함) 추가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(국토교통부)」에 따른다.

② 한국도로공사는 영업시설의 설치비를 부담하고, 달성군은 한국도로공사가 부담하는 사업비를 제외하고 조사 설계비, 공사비, 보상비, 제경비 등 일체 사업비를 부담한다.

③ 한국도로공사는 달성군이 부담하는 사업비의 납입 및 관리 등을 위해 한국도로공사 명의 운영계좌를 통합·설정하여 관리한다.

제7조(사업비 지급시기 및 방법) ① 달성군은 실시설계에 필요한 비용을 실시설계용역 발주 전 납부하고 한국도로공사는 실시설계 완료 후 연차별 사업비 소요 금액을 달성군에 통보한다.

② 달성군은 당해 연도 사업비에 대해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, 다음 연도 이후 사업비에 대해서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제6조 제3항에서 정한 지정 계좌로 예치하여야 한다.

③ 사업비 예치에 따른 발생이자는 보통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정산한다.

제8조(사업에 따른 인·허가 및 민원처리) ① 한국도로공사는 이 사업의 시행에 따른 관련 인·허가 업무를 수행하며, 달성군은 적극 협조한다.

② 한국도로공사와 달성군은 제반 민원에 대하여 협조 처리하되, 달성군은 지역주민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이패스전용 방식

에 대한 설명회 개최 등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노력을 해야 하며, 개통 후 일반 차량 이용 요구 민원 발생 시에는 달성군이 전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.

제9조(설계 등) ① 설계는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되, 달성군과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.

② 설계 확정 이후 관련계획의 변경이 필요하게 될 경우 한국도로공사와 달성군은 상호 협의하되, 제6조의 사업비 부담조건에 따라 각자의 책임분야에 대해 관련계획 변경을 추진 하여야 한다.

제10조(용지보상 등) ① 용지보상 업무는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고, 달성군은 이를 적극 지원한다.

② 보상업무 수수료는 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’에 의한 산정기준에 따라 사업비에 반영 정산한다.

③ 매입하는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(국토교통부) 명의로 한다.

제11조(공사관리) 시공 및 품질관리 등 공사관리는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되, 민원 또는 사업비 증액을 수반하는 중요한 설계변경 사항 발생 시에는 제6조에 의거 달성군과 협의하여 처리한다.

제12조(준공 또는 사업비 정산) ① 한국도로공사는 사업의 준공일 또는 협약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입된 사업비 내역이 포함된 정산내역서 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달성군에 정산 통보 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정산이 지연될 경우

한국도로공사와 달성군이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.

② 사업비 정산 결과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불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정산시점부터 추가 납입 또는 환불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산입하지 않는다.

③ 달성군은 제1항의 관계서류를 검토 후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한국도로공사에게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3조(사업진행상황 통지 등) ① 한국도로공사는 사업시행 과정에서 착공, 준공 등 사업진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달성군에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한국도로공사와 달성군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상호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상호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4조(영업 등) ① 영업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는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한다.

② 나들목 운영시간은 06:00~22:00까지를 원칙으로 하되, “고속국도 IC 추가설치지침”에 따라 교통량 변화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.

③ 한국도로공사는 운영시간 중이라도 고속도로(휴게소 포함) 또는 접속도로의 유고사항 및 정체가 발생하는 등 하이패스IC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한국도로공사의 결정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.

제15조(접속도로 시설물 소유권 및 유지관리 등) ① 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설치된 모든 시설물은 무상으로 한국도로공사의 소유로 귀속하고, 준공 후 시설의 하자관리 및 유지관리는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한다.

② 동 나들목의 교통량 증가 또는 접속도로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한 접속도로(접속부 포함)의 확장 및 개량 사업이 필요한 경우 달성군이 사업비 전액(영업시설 제외)을 부담한다.

제16조(협약의 해석)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한국도로공사와 달성군간에 이견이 있거나 본 협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17조(협약의 이행 등) ① 한국도로공사와 달성군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② 한국도로공사와 달성군은 필요시 본 협약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하여 상호 협의하여 협의회 등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제18조(협약의 변경 및 해지) ① 본 협약체결 이후 한국도로공사와 달성군은 일방적으로 협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본 협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.

② 연결허가조건 미 이행 또는 협약조건 미 이행으로 협약이
해지될 경우 미 이행 기관은 배상 및 원상복구 등의 책임을 진
다.

제19조(효력발생) ① 본 협약은 한국도로공사와 달성군이 협약
서에 기명날인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.

②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각자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
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한국도로공사와 달성군이 각각 1
부씩 보관한다.

2014 년 12월 일

달 성 군 군 수 김 문 오 (인)

한국도로공사 사 장 김 학 송 (인)